

**인장강도는 몇 kg이상이면 됩니까?**



그물코 크기가 2cm이하의 개구리 매듭방망은 현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24장(안전방망) 별표에서 정하는 인장강도가 없고, 다만 라셀방망의 인장강도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시98-23호 이후 검정규정과 관련하여 고시된 것이 있는지? 고시가 되었다면 고시번호와 2cm일 경우 개구리 매듭방망의 인장강도는 몇 kg이상이면 됩니까?



노동부 고시 제98-23호(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중 가설 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제24장(안전방망)별표의 인장강도 기준에 대하여 추가 고시된 사실은 없고, 현재까지 동 규정에는 그물코 2cm이하의 개구리매듭방망에 대한 인장강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 실시여부**



건설공사에서 발주처가 주한미군이 며, 공사지역이 주한미군 주둔지일 경우 공사금액이 3억~100억원일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 실시 유무를 문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간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 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적(자율적)구조물 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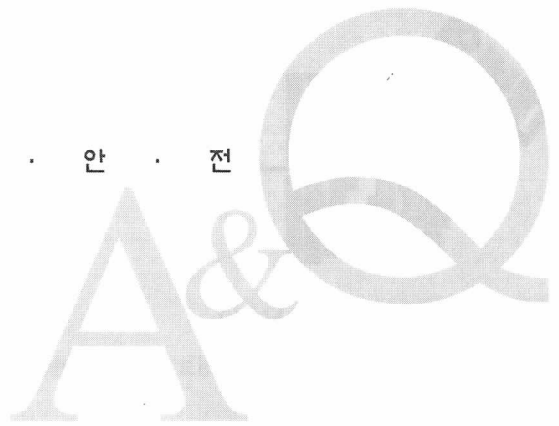


본현장은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노반개량공사를 하는 현장으로서, 공사수행중 구조물(교량)의 물리적 결함(크랙)이 발생하여, 노동부로부터 전문재해예방기관 및 건교부로부터 안전기관으로 인허가 된 전문업체를 선정, 자체적으로 해당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및 안전대책 수립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자율적인 사업장 안전진단(안전기술진단-기계, 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의2)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께서 구조물의 물리적 결함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의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 비용이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망의 사용기준 및 안전관리비 계상유무**



1.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추락, 낙하물지망 등의 안전망의 검정기준이 있는지 여부(흔히 몇 합 이상이라고함)
2. 건축물 등의 외부 낙하물방지망의 표준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 될 수 있는지 여부, 계상가능시 건기법과의 상충여부(높이에 따라 한계 적용 있는지)



안전망의 검정기준은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고시 제98-65호, '98. 12. 18)제14장 안전방망 제437조(강도)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제7조 사용기준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서상

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은 건물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 의무사항인지와 혹은 적용된 사업장이 따로 있는지, 의무사항이라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중노동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요즘 3D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출근시간만 있고 퇴근시간이 없는 정신,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1.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 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건강진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공지사항(2/3쪽)→2000년 건강진단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